

신탁계약 변경대비표

1. 대상펀드

- 한화그린히어로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
□ 변경사유

- 환매대금지급일 변경 (17 시 이전 : 8 영업일 → 6 영업일 / 17 시 경과후 : 9 영업일 → 7 영업일)

구 분	현 행	변경후
제 25 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	①(생 략) ②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8 영업일 (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9 영업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(이하 생략)	①(현행과 같음) ②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6 영업일 (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7 영업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(이하 현행과 같음)
제 26 조(환매연기)	①~⑥(생 략) 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4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 영업일 전일 (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7 영업일 전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(이하 생략)	①~⑥(현행과 같음) 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4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4 영업일 전일 (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5 영업일 전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(이하 현행과 같음)
부 칙	<u>〈신 설〉</u> <u>〈신 설〉</u>	제 1 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른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부터 시행한다. (2026.09.16) 제 2 조(환매대금지급일의 적용) 제 26 조, 제 27 조의 변경 내용은 2026 년 9 월 16 일에 환매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